

수정안 대비표

원안	수정안
<u>서울특별시종로구명예구민중수여조례안</u>	<u>서울특별시종로구명예구민선정조례안</u>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종로구(이하 “구”라 한다) 구정발전에 기여한 <u>내·외국인에게 서울특별시종로구명예구민중(이하 “명예구민중”이라 한다)의 수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u>	제1조(목적) ----- ----- <u>내·외국인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종로구명예구민(이하 “명예구민”이라 한다)으로 선정하는</u> ----- --
제2조(수여대상) <u>명예구민중 수여대상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선정한다.</u> 1.-3. (생략)	제2조(대상) <u>명예구민 대상자는</u> ----- ----- 1.-3. (현행과 같음)
제3조(후보자 추천) 구청장,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의원(이하 “구 의원”이라 한다) 및 공공단체의 장, 10인 이상의 회원을 가진 사회단체의 장 또는 10인 이상의 구민은 <u>명예구민중 수여 후보자</u> 를 추천할 수 있다.	제3조(후보자 추천) ----- ----- ----- ----- <u>명예구민</u> ----- -----
제4조(수여대상자 결정) <u>명예구민중 수여대상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서울특별시종로구명예구민중수여심사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의 심사를 거쳐 결정한다. 다만, 제2조제3호의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.</u>	제4조(대상자 결정) <u>명예구민은</u> ----- ----- <u>서울특별시종로구명예구민선정심사위원회</u> --- ----- -----

원안	수정안
제5조(수여의 방법 및 부상) ①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<u>명예구민증 수여대상</u>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하여는 <u>명예구민증</u>과 <u>명예구민증명서</u>를 수여한다.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<u>명예구민증을 수여받은</u> 사람에 대하여는 명예구민 메달 또는 기념품을 수여할 수 있다.	제5조(<u>명예구민증 수여</u> ---) ① --- ----- <u>명예구민으로</u> ----- ----- <u>서울특별시종로구명예구민증</u>과 <u>서울특별시종로구명예구민증명서</u>를 수여한다. ② ----- <u>명예구민으로 선정된</u> -----
제6조(사후관리) ①<u>명예구민증을 수여받은 사람</u>에 대하여는 구민에 준하여 행정상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. ②<u>명예구민증을 수여받은 사람</u>에 대하여는 구정관련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거나, 구 주관 행사 등에 참여하는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. ③구청장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<u>명예구민증 수여기록대장</u>을 작성·비치하여야 한다.	제6조(사후관리) ①<u>명예구민에</u> ----- ②<u>명예구민에</u> ----- ③ ----- <u>명예구민 기록대장</u>을 -----
제7조(수여취소) ①구청장은 <u>명예구민증을 수여받은 사람이 수여취지에 반한다</u>고 인정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<u>명예구민증 수여</u>를 취소할 수 있다.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<u>명예구민증 수여</u>가 취소된 사람은 취소된 때부터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상 혜택 및 구정참여의 기회부여도 취소된다.	제7조(<u>선정취소</u>) ① ----- <u>명예구민으로 선정된</u> ----- <u>선정취지에</u> ----- ----- <u>명예구민 선정을</u> ----- ② ----- <u>명예구민 선정이</u> -----

원안	수정안
제8조(명예구민중 수여심사위원회)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사 또는 심의하기 위하여 구에 위원회를 둔다. 1. <u>명예구민중 수여대상자로</u> 추천된 후보자에 대한 적격여부 2. <u>명예구민중을 수여 받은 사람에 대한 그 수여의</u> 취소여부 3. (생략) ② (생략) ③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, 부위원장은 행정관리국장으로 하며,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두되, 간사는 <u>명예구민중을 주관하는</u> 부서의 과장이 된다. ④-⑤ (생략)	제8조(명예구민 선정심사위원회) ①-- ----- ----- ----- 1. <u>명예구민 대상자로</u> ----- ----- 2. <u>명예구민으로 선정된</u> ----- ----- <u>선정의</u> ----- 3. (현행과 같음) ② (현행과 같음) ③ ----- ----- ----- ----- <u>명예구민 주무</u> ----- ----- ④-⑤ (현행과 같음)